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26. 3. 27.(금)



행정복지위원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7.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01호
- 제출 일: 2026년 3월 6일
- 제출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3. 19.)

2. 제안사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산세를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성년자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의 한시 감면 규정 신설(안 제12조의4)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4.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성년자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재산세의 한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기에 관련 심의가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며,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더라도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만 적용하기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02호
- 제출 일: 2026년 3월 6일
- 제출 자: 서도원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3. 19.)

2. 제안사유

- 우수 자원봉사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른 표현 정비
- 정의 삭제(안 제2조)
- 우수자원봉사자 우대사항 신설(안 제14조)

4.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내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 자원봉사활동이란 상위법령상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년~2027년)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부흥하기위한 개정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은 자원봉사 관련시설의 확대보다는 홍보·기록 등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기능을 더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우대사항과 관련하여 광역 및 타구의 조례를 비교검토해본 결과 광역 및 일부 자치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있습니다.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비고
1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연구 / 봉사대상 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우수 자원봉사자 대상)
2	남구		-
3	달서구		-
4	수성구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5	중구		-
6	동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군위		-
8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	자원봉사자 우대 경비지원

○ 따라서, 본 개정안의 취지인 예우에 대한 조문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국가 및 광역 추진사항과도 부합하며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우대 자원봉사자의 대상자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03호
- 제출 일: 2026년 3월 6일
- 제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3. 19.)

2. 제안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제도인 ‘아이돌봄사’로 정비하는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달성군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정의 인용 조문 명확화(안 제2조)
- 중복 규정 삭제(안 제5조)
- 위탁 규정 등 조문 정비(안 제6조~제8조)

4.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자치법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 및 위탁 근거를 정비하여 행정처리의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상위법령과의 부합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현 조례 제2조제5호에서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봄 지원법」이 2025년 4월 개정됨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시기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으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의 경우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안 제2조제4호).

○ 둘째, 보조금 지원 및 위탁 근거를 정비하여 행정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현 조례에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한 경우 따르거나 준용해야 할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조제2항에서 위탁시 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5조는 제4조제1항제2호로 해석가능하며, 제7조의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상 수탁기관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바, 본 조문들을 삭제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시기에 맞추어 자치법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 ▲불필요하게 산재하여 있던 조항들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을 직접 인용하여 법적 안정성 높은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90호
- 제출 일: 2026년 3월 5일
- 제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3. 19.)

2. 제안사유

- 상위법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제2호~제3호)
- 학교복합시설의 사용 허가·취소·사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제4호, 제2조의2, 제2조의3, 별지)

4. 관계법령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준공된 학교복합시설(화원초 학교복합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역할이 명기된바, 향후 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91호
- 제출 일: 2026년 3월 5일
- 제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3. 19.)

2.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5-312호, 2025. 9. 8. 의결)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여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 ~ 제3항)

4. 관계법령

- 「도서관법」, 같은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의안번호 제 2025-312호, 2025. 9. 8.)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 자료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카페형태의 열람실 확보, 전산실 변경등의 환경개선 등을 이유로 2022년 이후 제적 도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보관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도서관의 관리상태와 관계없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 폐기된 도서는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어 상품 포장용 판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 활용 방안 부재, ▲선별 등을 위한 인력 부족 문제, ▲자치단체장이 폐기 도서를 무상 제공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도서 제적·폐기 및 무상배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될 경우 무상배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2007도7205호)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관의 무상 배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추가 소요 없이 폐기될 수 있는 자원을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추후, 사업 진행시 폐기 도서 선별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기를 제안드립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92호
- 제 출 일: 2026년 3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3. 19.)

2. 제안사유

- 효과적인 군정 홍보 추진과 홍보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교육 운영과 포상금 등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터넷 홍보 매체 관련 시행 가능 사업 확대 (안 제4조)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예산지원 범위 명확화 (안 제7조)
-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포상 기준 명확화 (안 제9조)
 -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기여한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
 - 인터넷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목적으로 실시된 교육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비대상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내부 공직자들의 홍보 역량 강화 교육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최근 지방행정에서 SNS 및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전산 및 홍보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시행 가능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 및 제9조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홍보 기여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 최대 150만 원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홍보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따라서, 홍보 업무의 범위를 공무원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교육 평가에 따른 포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조직 내 홍보 마인드를 고취하고 군정 소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정된 홍보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공직자가 홍보 요원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 추후, 사업 진행시 기여부서 및 우수 공무원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93호
- 제 출 일: 2026년 3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 상정 및 의결: 제32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026. 3. 19.)

2. 제안사유

-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변경
 - (구)약산온천 온천개발 사업이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이래, 주변 환경과 미관을 훼손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구)약산온천 호텔이 철거되고 토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함.
 - 이에, 약산힐링원 개발사업의 건축물 계획을 구체화(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며,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및 활용
 -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28년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부지 활용 및 개발이 필요함.

- 이에 우리 군이 해당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이자 등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방지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 개발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달창 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변경
-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방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차난 해결 및 경관 유지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주차장 2개소 부지 매입안이 가결되었으나, 주차장 2개소 중 제1주차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지역주민의 위치 조정 요구, 벚꽃길 행사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제1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을 당초 4,523㎡(6필지)에서 13,450㎡(20필지)로 확대·조정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행사 및 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현풍백년도개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 현풍백년도개비시장은 100년 전통의 시장으로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경상남도 창원군 등을 두루 아우르고, 특히 설·추석 명절과 5일장이 개최되는 날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대구 남부권 최대 전통시장임.
 - 최근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편의 시설이 확충되었으나, 비가림 시설이 없어 비가 오는 날이나 한여름 햇빛이 강한 날에는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고객들의 편의 제공,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함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

- 재활용품 선별장이 노후화되고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른 선별작업의 불편 및 적재공간의 협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변경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변 경	비 고
사업명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
부지면적	21,106㎡	21,861㎡	증 755㎡(국유지) - 하리 895 (구거,569㎡) - 하리 895-1(구거,186㎡)
연면적	350㎡	968.15㎡	증 618.15㎡
총사업비	203.8억원	236.3억원	증 32.5억원
주요시설	캠핑장, 썰매장(사계절) 놀이시설(네트형), F&B	글램핑장, 숲놀이장 관리동(F&B, 키즈카페) 성인·유아풀(Pool)장	사업내용 변경

- 사업명 :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 위치 : 논공읍 하리 509번지 일원
- 면적 : 21,861㎡(약 6,564평)
- 사업기간 : 2023. 1. ~ 2028. 6.

- 주요시설 : 글램핑장, 숲놀이시설, 관리동(F&B, 키즈카페), 성인·유아풀 등
- 관리동(본관)

층 수	면 적(m ²)	내 부 시 설
2층	218.25	휴게음식점
1층	577.50	키즈카페, 소매점, 야영장 사무실
지하 1층	172.40	물탱크실, 기계·전기실
총계	968.15	

- 총사업비 : 236.3억원(전액 준비)
- 부지매입비 108억, 공사비 104.8억, 부대비 10.5억, 예비비 13억

※기준가격(대장가격)

- 토지 매입(공시지가×면적) : 79,954,500원
- 건물 신축(사업비) : 10,473,645,0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3. 1. : (구)논공학생야영장 매매 약정 체결
- 2023. 8. :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사업 계획 수립
- 2023. 11. : (구)논공학생야영장 매매 계약 체결
- 2024. 2. : (구)논공학생야영장 등기이전
- 2024. 12. : (구)약산온천호텔(토지) 매매 약정 체결
- 2025. 2. : 약산힐링원 개발계획 수립
- 2025. 4. : (구)약산온천호텔(토지) 매매 계약 체결
- 2025. 5. : (구)약산온천호텔(토지) 등기이전
- 2025. 9. :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계획 수립(변경)
- 2025. 10. : 건축기획 용역 착수
- 2026. 1. : 건축기획 용역 완료
- 2026. 4. :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7. 6. : 공사 착공
- 2028. 6. : 준공 및 개관

나.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및 활용

- 사업명 :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 위치 : 화원읍 설화리 563, 명곡리 324, 324-1
- 면적 : 38,961.7㎡(약 11,806평)
- 사업기간 : 2026. 1. ~ 2030. 12.
- 주요내용
 - (단·중기) 임시주차장 및 정원·산책로 조성 후 주민개방
 - (장 기) 대규모 국책사업 및 종합의료기관 유치 추진
- 총사업비 : 419억 원 정도 (부지매입비 398억 원, 공사비 21억 원)

조성원가 : $482,456\text{원}/\text{m}^2 \times 38,961.7\text{m}^2 = 18,797,305,935\text{원}$
이 자 : 20,937,108,844원
(사업준공일 `02.02.25. | 이자기산일 `04.02.26., | 이자 연 5%)
※ 계약일에 따른 이자액 변동 가능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 매입(공시지가×면적) : 65,027,077,3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3. ~ 현재 : 종합의료기관 유치활동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대구시 건의
 - 2026. 2.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추진
 - 2026. 3. : '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 2026. 4. ~ 5.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市 상화로 입체화 사업 현장사무소 등 사용허가
 - 2026. 4. ~ 12. : 임시주차장 및 정원·산책로(1단계) 조성
 - 2026. ~ : 종합의료기관 및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추진
 - 2028. : 정원·산책로(2단계) 추가 조성

(1단계)

- 임시주차장 : (면적) 약 14,000㎡, (주차대수) 약 400대
- 정원·산책로 : (면적) 약 12,000㎡, (내용) 어린이놀이광장, 잔디광장 등

(2단계)

- 2028년 市상화로 입체화 사업 준공 후 정원·산책로 추가 조성
- (면적) 약 12,679㎡

다.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변경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제322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변 경	비 고
사업명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위 치	· 제1주차장 : 가태리 945-3번지 외 5필지	· 제1주차장 : 가태리 923-4번지 외 19필지	제2주차장은 변동 없음
면 적	· 제1주차장 : 4,523㎡ · 제2주차장 : 6,184㎡	· 제1주차장 : 13,450㎡ · 제2주차장 : 6,184㎡	증 8,927㎡
총사업비	49억원	75억원	증 26억원
주요내용 (주차면수)	· 제1주차장 : 160대 · 제2주차장 : 190대	· 제1주차장 : 600대 · 제2주차장 : 190대	제2주차장은 변동 없음

- 사 업 명 :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 위치 및 규모

- 제1주차장 : 유가읍 가태리 923-4번지 외 19필지, A=13,450㎡
- 제2주차장 : 유가읍 본말리 397번지 외 5필지, A=6,184㎡

- 사업기간 : 2026. 3 ~ 2029. 12.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2개소

※ 주차대수 : 790대(제1주차장 600대, 제2주차장 190대)

- 총사업비 : 75억원
 - 부지매입비 65억, 공사비 10억

※ 기준가격(대장가격) - 제 1주차장 부지(공시지가 × 면적) : 1,449,491,000원 - 제 2주차장 부지(공시지가 × 면적) : 609,124,300원
--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3. 11. ~ 2024. 6.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25. 11. :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 관련 주차장 부지 매입(당초안) 가결
 - 2025. 12. ~ 2026. 7. : 달창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 포함)
 - 2026. 10. : 감정 평가, 매입금 확정
 - 2026. 11. ~ 2027. 6. : 토지 협의 매수
 - 2027. 6. ~ 12. : 제1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2028. 1. ~ 12. : 제2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 제2주차장은 연접하여 계획한 수변공원 결정 및 조성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

라.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 사업명 :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 위치 : 현풍읍 원교리 12-5
- 설치면적 : 1,802㎡
- 사업기간 : 2026. 4. ~ 12.
- 주요시설 : 아케이드(가설건축물)

- 총사업비 : 31.1억원 정도
 - 공사비 29.84억, 설계비 0.97억, 감리비 0.19억, 부대비 0.1억

※기준가격(대장가격)

-가설건축물(사업비) : 3,110,000,0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군 자체) 진행
 - 2026. 4. : 공공건축심의 완료
 - 2026. 6. : 실시설계 완료
 - 2026. 7. : 일상감사·계약심사
 - 2026. 8. : 착공
 - 2026. 12. : 준공

마.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

- 사업명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
- 위치 : 현풍읍 원교리 719번지 일원
- 규모
 - 면적 : 부지면적 9,515㎡, 연면적 약 3,200㎡
(현재 : 부지면적 3,901㎡, 건축면적 768㎡, 연면적 1,207㎡)
 - 처리량 : 45톤/일(현재 : 10톤/일, 실제처리량 : 23톤/일)
- 사업기간 : 2019. 10. ~ 2028. 12.
- 주요시설 : 선별시설, 계근시설, 야적장 등
- 총사업비 : 201억원 정도
 - 공사비 153억, 설계비 9.6억, 감리비 15.7억, 예비비 18억

- 철거설계비 0.1억, 철거비 1.9억, 폐기물 처리비 2.3억
- 부지 매입안 2019년 제276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가결

※기준가격(대장가격)

- 건물 철거(시가표준액)	: 820,745,800원
- 건물 신축(사업비)	: 19,632,364,325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0. 10. : 토지 및 지장물 재산취득 완료
- 2020. 10. ~ 2024. 8. :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소송으로 사업 지연
- 2025. 5. ~ 9. :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026. 1.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6. 1. :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
- 2026. 5.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7. 1. : 착공
- 2028. 12. : 준공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시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변경건은 (구)약산온천호텔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이색 체류형 복합공간(글램핑장, 숲놀이장 등)의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내 국유지 2필지(755㎡)를 추가 매입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2층 건물(연면적 968.15㎡)을 신축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당초 대비 32억5천만원이 증액된 236억 3천만 원입니다.
- 화원 설화리 미래전략사업부지 매입 및 활용건은 28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채 방치된 부지(38,961㎡)를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 부담 증가를 막고, 단기적으로는 약 40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과 정원·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며, 장기적으로는 종합의료기관 및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19억 원입니다.
- 다만, 30년 가까이 방치되어있던 부지에 대규모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당초 목표한 종합의료기관 유치 등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특수치료 병원 등)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변경건은 관광객 증가 대비 및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제1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당초 4,523㎡에서 13,450㎡(600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접근성 개선 및 지역 축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총사업비는 당초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75억 원입니다.
- 관련하여 본 예산 심사시 승인된 사업규모가 짧은 기간 내에 대폭 변경되고 막대한 예산 증액이 요청된 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 계획이 변경 승인 된 이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기획 단계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건은 대구 남부권 최대 전통시장 내 주요 통행 구간(설치면적 1,802㎡)에 비가림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천 및 폭염 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31억 1천만 원입니다.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건은 기존 선별장의 노후화와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일일 처리량을 10톤에서 45톤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규모(연면적 약 3,200㎡)의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필수 투자로, 총사업비는 201억 원입니다.
- 이를 위해 3건의 토지를 매입하여 약 671억6천만원, 3건의 건물을 신축하여 약 332억1천만원 등 총 1,003억8천만원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1건의 건물과 공적물을 철거하여 약 8억2천만원의 공유재산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장기 방치 부지 해소, 노후 기반시설 현대화, 관광 거점 주차장 확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 사항을 담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